

## [사 건 명] 행심 2019 - 31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 I. 사건개요

- 가. 중학교 3학년인 청구인 그룹과 피해학생 그룹은 2018년 5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교내 및 사이버 상에서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고 글을 쓰는 등 말다툼과 언어폭력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지나가는 길에 피해학생에게 “개 웃기게 생겼네” 라고 말하면서 피해학생 얼굴 비하 발언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11.09.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중에 피해학생 친구가 청구인의 패딩점퍼에 침을 뱉었으나,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침을 뱉은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학생에게 유선으로 ‘니가 침 뱉은 애요 000아’ 라고 욕을 하였다.
- 라. 2018.12.2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라고 함.)를 개최

하여, 청구인이 욕을 한 사실에 대하여, 2018.12.31. 청구인에게 『서면 사과』 처분 조치하였다.

마. 2019.01.18.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8.12.27. 학폭위 참석 시 피해자 입장으로 참석하였으나, 학폭위 간사의 사건 설명에서 안이한 점이 있어 청구인이 위원장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울면서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가해 처분인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다.

나. 피해학생 그룹은 2018년 4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사이버상에서 청구인에게 심한 욕설로 모욕과 명예훼손, 협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피해학생 측이 사과를 하라고 협박하여 억울함을 참고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

## III.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청구인은 2018년 5월부터 12월 중순까지 피해학생에게 “개 웃기게 생겼네” 라는 얼굴 비하 발언을 하였으며, 페이스북 상의 댓글에서도 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2018.11.09. 청구인의 패딩점퍼에 가래침이 묻어 있었는데,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침을 뱉은 것으로 오해하여 유선으로 피해학생에게 ‘니가 침 뱉은애요, 000아 “라고 욕을 하였으며, 욕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인정을 하였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해학생에 대해서 사이버상 또는 유선상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므로 학생의 보호 및 교육 측면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라. 피청구인은 관련학생들의 진술과 사이버상의 저격글과 댓글이 일치하는 부분만을 고려하여 조치하였고 또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구분하지 않고 가해사실과 피해사실을 고려하여 조치하였으며, 청구인은 가해처분을 받은 동시에 피해를 입은 피해학생으로서의 조치도 받았다.
- 마.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적 판단에 의한 교육적 조치를 하였고, 다른 해당 학생들도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분을 받았으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IV. 청구인 적격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 당시 ○○학교 3학년 학생이었으나 현재는 ○○학교 졸업생으로, 졸업과 동시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록이 모두 삭제되었다고 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지만,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생활기록부에 삭제가 된다고 하여도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할 것이다.

## 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피청구인의 대리인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8년 5월부터 12월 중순까지 피해학생에게 “개 웃기게 생겼네” 라는 얼굴 비하 발언등을 하였으며, 페이스북 상의 댓글에서도 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2018.11.09. 청구인의 패딩점퍼에 가래침이 묻어 있었는데, 청구인은 피해학생이 침을 뱉은 것으로 오해하여 전화통화중 피해학생에게 ‘니가 침 뱉은애요, 000아 “라고 욕을 하였으며, 욕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인정을 하였다.

###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전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피해학생에게 한 “개 웃기 게 생겼네” 라는 얼굴 비하 발언과 2018.11.09. 청구인이 피해학생이 침을 뱉은 것으로 오해하여 전화통화중 피해학생에게 “니가 침 뱉은애요, 000아” 라고 욕을 한 것은 모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량의 남용·일탈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

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본 사안의 경우 전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피해학생 그룹으로부터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당하였다는 점을 참작할 수 있지만,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안이 다시 발생할 것이 우려가 되며, 청구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서면사과 처분은 적절하다 할 것이며,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다.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VI.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